<부록1> 미국 통상법 제337조 번역본

제337조.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

(a) 불법한 행위; 해당 산업; 정의

(1) (2)항을 조건으로 다음 사항들은 불법이며 ITC에 의해 그 존재가 입증된 경우, 다른 관련규정과 함께, 본조에 규정된 바에 의해 규율된다.

(A) 물품 ((B), (C) 및 (D)에 규정된 물품은 제외)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그 물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 판매인이 판매하는데 있어 불공정 경쟁방법 및 불공정 행위로서 그에 따른 위협 또는 효과가-

(ⅰ) 미국 내 관련 산업을 파괴 또는 실질적 피해를 입히는 것;

(ii) 그러한 관련 산업의 정착을 방해하는 것; 또는

(iii) 미국 내 교역 또는 통상을 억제 또는 독점하는 것.

(B) 아래 기재된 물품의 미국 내로의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또는 수입 후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 판매인에 의한 미국 내에서의 판매-

(ⅰ) USC 제17편에 의해 등록된, 유효하고 실시 가능한 미국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 또는

(ii) 유효하고 실시 가능한 미국특허권의 청구범위에 속하는 공정에 따라, 또는 그 공정에 의해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채굴된 물품.

(C) 1946년 상표권법에 의해 등록된, 유효하고 실시 가능한 미국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미국 내로의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또는 수입 후 그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 판매인에 의한 미국 내에서의 판매

(D) USC 제17편 제9장에 의해 등록된 mask work를 침해하여 생산된 반도체 칩 제품의 미국 내로의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또는 수입 후 그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 판매인에 의한 미국 내에서의 판매

(E) USC 제17편 제13장에 의해 보호되는 의장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미국 내로의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또는 수입 후 그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 판매인에 의한 미국 내에서의 판매.

(2) (1)항 (B), (C) 및 (D)호는 관련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mask work 또는 의장권에 의해 보호되는 물품과 관련하여 미국 내 상업이 존재하거나 또는 정착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2)항의 목적상 미국 내 상업은, 관련된 특허권, 상표권, mask work 또는 의장권에 의해 보호되는 물품에 대해 미국 내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A) 공장과 설비에 대한 상당한 투자;

(B) 노동과 자본의 상당한 투여; 또는

(C) 기술이용, 연구개발 또는(지적재산권) 실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4) 본 조의 목적상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판매인”이란 용어는 당해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판매인의 대리상을 포함한다.

(b)위반에 대한 ITC 조사

(1) ITC는 청원이나 자체발의에 의해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연방관보에 개시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ITC는 조사개시공고 후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조사를 종결하고 본 조에 따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속한 판정을 위해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내에 최종결정을 위한 목표기일을 정해야 한다.

(2) 본 조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ITC는 보건후생부, 법무부, 연방무역위원회 및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타 部 및 산하기관과 협의하고 자문과 정부를 구해야 한다.

(3) 본 건 조사과정에서 ITC가 관련정보에 근거하여, 특정사안의 전체 또는 일부가 1930년 관세법 제4절 제2관의 범위에 속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ITC가 동 제2관에 의해 별도로 수권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신속히 상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정사안이 (A) USC 제19편 (“Customs Duties") 제671조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와 효과에 전적으로 근거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나 (B) USC 제17편 ("Copyrights") 제8조 (“Prohibition on certain infringement actions")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경우, ITC는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종결시키거나 조사를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동 사안이 (앞에 기술한) 제671조나 제673조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와 효과에 부분적으로 근거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행위와 효과와는 독립하여 또는 연관되어, 본안에 따른 구제조치의 근거가 되는 행위 및 효과에도 부분적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ITC는 동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계속할 수 있다.

ITC가 본안 제3항에 근거 특정 사안에 대해 해당장관이나 행정당국 (USC 제19편 제677조 (1)에 정의된 바의)에 통지할 경우, ITC는, 최종판정을 위해 동 사안이 그 장관 또는 행정당국에 계류되어 있는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ITC가 해당장관이나 행정당국에 통지한 앞에 기술한 제671조 또는 제673조에 속하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행정당국의 최종판정은, 공정가격 이하판매 또는 보조금 지급 및 동 판정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ITC를 구속한다.

(c)판정; 재심

ITC는 본안에 의거하여 실시한 각 조사에 대해 본안의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단, ITC가 그러한 판정을 내리지 않고 승낙명령을 내리거나 사안을 중재판정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를 포함한 조사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를 포함한 조사에 관련된 사인간의 합의에 근거하여,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조사를 종결시킬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또는 (e)에 따른 각 판정은 (USC) 제5편 제5장 제2부장(副章)의 규정에 따른 공고 및 공청회 기록을 근거로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사안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반론은 제기될 수 있다.

피청원자는 ITC 규정에 따라 어떠한 반소라도 제기할 수 있다. ITC에 의해 반소가 접수된 후 즉시 피청원인은 (USC) 제28편 제391조에 근거하는 재판지인 미국 지방법원에 (연방법원으로의) 이송고지를 접수하여야 한다.

본안에 따라 제기된 반소는 ITC 절차상 원래의 청구가 제기된 날짜로 소급된다. 그러한 반소는, 본 부조(附條)에 의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반론을 포함하여, 본조 하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d), (e), (f) 또는 (g)에 따라 내려진 ITC의 최종판정에 불이익을 당한 자는 누구든지 USC 제5편 제7장에 따라 “미국관세 및 특허항소법원”에 최종판정 후 6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a), (b) 항에도 불구하고 (d), (e), (f) 및 (g)에 따라 ITC가, 공중보건 및 후생, 미국경제내의 경쟁조건, 미국 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의 생산 및 미국 소비자, 보증금의 금액과 성격 또는 구제조치의 적절성에 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판정은 USC 제5편 제706조에 따라 재심될 수 있다.

보증금 몰수에 관한 (e), (f)와 (j)항에 근거한 ITC의 판정과, 증거개시절차남용이나 절차상 남용의 제재 부과에 관한 (h)항에 따른 ITC 판정은 USC 제5편 제706조에 따라 재심될 수 있다.

(d) 물품의 반입배제

(1) ITC는 본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본조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되는 모든 관련물품의 미국내 반입을 배제하여야 한다. 단, ITC가 공중보건 및 후생, 미국경제내의 경쟁조건, 미국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의 생산 및 미국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당해물품의 반입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ITC는 (d)에 따른 반입배제조치를 재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무장관은 동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된 관리를 통하여 당해물품의 반입을 거부하여야 한다.

(2) ITC가 다음의 (A), (B)와 같이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배제명령을 발한 ITC의 권한은 본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A) 기명된 자의 물품에 한정된 배제명령의 무력화를 막기 위해 일반배제명령을 발하는 경우; 또는

(B) 본조 위반의 계속된 행동양식이 있고 위반물품의 생산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e) 보증금 예치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기간 중의 물품의 반입배제

(1) 본조의 조사기간 중 본조 위반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ITC가 결정한 경우, ITC는 본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자가 수입한 관련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배제할 수 있다.

단, ITC가 동 배제명령이 공중보건 및 후생, 미국경제내의 경쟁조건, 미국 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의 생산 및 미국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당해물품의 수입을 배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ITC는 본 (e)항에 따른 반입배제조치를 재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무장관은 통보를 받는 즉시 관련 관리를 통하여 당해 반입을 거부해야 한다. 단, 동 물품들은 ITC가 청원자를 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게 산정되고 재무장관이 명령한 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반입이 허용될 수 있다.

후에 피청원자의 본조 위반이 ITC에 의해 확정된 경우 예치된 보증금은 몰수되어 청원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청원자는 本 (e)항에 따라 조사기간중 반입배제명령을 발하도록 ITC에 청원할 수 있다.

ITC는 조사개시공고가 연방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청원에 대하여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보다 복잡한 사안으로 지정된 경우 90일 기간을 6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ITC가 특정조사를 보다 복잡한 건으로 지정할 경우 연방관보에 그 이유를 게재해야 한다.

ITC는 (e)항에 따라 조사기간중 반입배제명령을 내리는데 선결요건으로 청원자에게 보증금 예치를 명할 수 있다.

후에 피청원자가 본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ITC에 의해 확정된 경우, 예치된 보증금은 몰수되어 피청원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ITC는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연방규칙”에 따라 예비적 금지명령과 잠정적 규제명령이 허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정도까지 (e)항 또는 (f)항에 따라 예비적 구제조치를 발할 수 있다.

ITC는 (1)항과 (2)항에 따라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는 경우의 요건과 조건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f) 중지명령; 명령위반에 대한 민사벌

(1) ITC는 (d) 또는 (e)에 근거한 조치에 추가하여, 또는 동 조치를 취하는 대신, 본조를 위반한 자 또는 본조를 위반했다고 간주되는 자에게 관련 불공정한 방법 또는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단, ITC가 동 중지명령이 공중보건 및 후생, 미국경제내의 경쟁조건, 미국 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물품의 생산, 미국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중지명령을 발해서는 안 된다고 판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ITC는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통지와 방법에 의해 어느 때고 중지명령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의 경우는 (d) 또는 (e)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ITC는 본조 (e)에 근거한 배제명령에 추가하여, 또는 동 명령을 대신하여 잠정적 중지명령을 발하는 경우, ITC는, 본 항 이하 어떤 명령을 발하는 전제요건으로, 피청원자를 가능한 손해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히 산정된 금액의 보증금의 예치를 청원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후에 피청원자가 본조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ITC에 의해 확정된 경우, 예치된 보증금은 몰수되어 피청원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본 항에 의해 보증금이 몰수되어지는 경우 ITC는 그 요건과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2) (1)에 의거 ITC가 발한 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동 명령을 위반한 자는 명령을 위반하여 물품이 수입 또는 판매된 각각의 날에 대해, 10만불 또는 해당 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일에 반입 또는 판매된 물품의 국내가액의 2배 중 큰 쪽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민사벌금을 물어야 한다.

동 벌금은 미국에 귀속되고 워싱턴 D.C 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서 ITC에 의해 제기된 민사소송에 의해 징수될 수 있다.

그러한 소송에서 미국의 지방법원은 ITC의 구제조치의 취지를 수용하면서, ITC의 최종명령을 시행함에 있어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강제금지명령을 발할 수 있다.

(g) 배제명령 또는 금지명령; 요건과 적용 절차

(1) 만일-

(A) 특정인에 대해 본조에 의한 소가 제기되고;

(B) 동 제기된 소 및 조사개시공고가 특정인에게 통보되고;

(C) 그 특정인이 제기된 소 및 공고에 대해 회신하지 않거나 또는 달리 응답하지 않고;

(D) 동인이 조사불응이 아님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고; 그리고

(E) 제소자가 오직 그 특정인에 한정하여 구제를 추구하는 경우;

ITC는 소에서 주장된 사실을 진실로 간주해야 하며 청구된 바에 따라 특정인에 한정된 반입배제 또는 중지명령 또는 양자를 모두 발하여야 한다.

단, ITC가 반입배제 또는 중지명령이 공중보건 및 후생, 미국경제내의 경쟁조건과 미국 내 동종 또는 직접경쟁상품의 생산, 미국 소비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동 반입배제 또는 중지명령을 발해서는 안된다고 판정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2) 본조 규정위반에 관한 ITC의 조사를 피소자가 다투는 경우, 일반적 반입배제명령을 발할 수 있는 ITC의 권한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물품의 수입원이나 수입업자를 불문하고 발해질 수 있다.

(A) 누구도 본조 규정위반에 관한 조사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거나,

(B) 동 규정위반이 실질적이며 신뢰할 만하고 입증할 만한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C) 본조 (d)(2)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h) 증거개시남용과 절차남용에 대한 제재

ITC는, 증거개시절차남용과 소송절차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연방규칙" 제11조와 제37조에 의해 인정된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i) 몰수

(1) (d)에 따른 조치에 추가하여 다음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ITC는 본조규정을 위반하여 수입되는 물품을 수입되는 물품을 압류 또는 몰수토록 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A) 해당물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 판매인이 과거에 해당물품을 미국 내로 수입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고;

(B) 동 물품이 과거에 (d)에 따라 발해진 명령을 이유로 미국 내 반입이 거부된 적이 있고; 그리고

(C) 상기 반입거부의 경우에 재무장관이 당해물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 판매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명의 통지를 한 경우-

(ⅰ) 당해 명령, 그리고

(ii) 추후 당해물품을 미국 내로 수입하려는 경우 당해물품을 압류 또는 몰수하겠다는 취지

(2) ITC는 (i)항에 따라 발해진 명령을 재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즉시 재무장관은 본조 규정에 따라 동 명령을 시행해야 한다.

(3) (i)항에 따라 발해진 명령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반입시도가 있는 경우, 재무장관은 모든 반입 항(港)에 수입시도 사실을 통보하고 (1)(C)에 따라 통보된 자들을 파악해야 한다.

(4) 재무장관은-

(A) (d)에 따른 명령 때문에 미국내 반입이 거부된 물품의 소유자, 수입업자 또는 위탁 판매인에게 (1)(C)에 기술된 서면에 의한 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그리고

(B) 동 통지서 사본 1부를 ITC에 제공하여야 한다.

(j) 대통령에 회부

(1) ITC가 본조 위반행위가 있다고 판정하거나, 또는 (e)의 목적상 그러한 위반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 ITC는-

(A) 동 판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B) 동 판정 및 그에 따라 (d), (e), (f), (g) 또는 (i)에 의거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한 내용 사본 1부를, 동 판정의 기초가 된 기록과 함께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만일 대통령이 상기 판정의 사본을 받은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치적인 이유로 해당 판정을 거부하고 이를 ITC에 통보한 경우, 동 통보일자로 당해판정 및 그에 따라 (d), (e), (f), (g) 또는 (i)에 의해 취해진 조치는 효력 또는 영향을 상실한다.

(3) (2)를 단서로 하되, 동 판정은 (c)의 목적을 제외하고 연방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동 판정에 따라 (d), (e), (f), (g) 또는 (i)에 의거 취해진 조치는 해당 각 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단, (d)에 따라 반입배제지시를 받거나 또는 (f)에 의거한 중지명령의 대상물품은 ITC의 판정이 최종적인 것이 될 때까지는, ITC의 판정이 최종적인 것이 될 때까지는, ITC가 청원자의 손해를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게 산정하고 재무장관이 명령한 보증금 예치를 전제로 반입이 가능하다.

동 판정이 최종적이 되면, 예치된 보증금은 몰수되어 청원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본항에 의해 보증금이 몰수되어지는 경우 ITC는 그 요건과 조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4) 대통령이 상기한 60일 기한 내에 ITC 판정을 승인하지 않거나 동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정을 승인한다고 ITC에 통보할 경우, (3) 및 (c)의 목적상 그 판정은 60일 기한 만료인 다음 날 또는 대통령이 ITC에 승인을 통보한 날에 최종적인 것이 된다.

(k) 효력기간; 위반 종결 또는 (배제명령의) 수정 또는 배제(명령)의 폐지 또는 명령

(1) (f)와 (j)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본조에 따른 수입금지 또는 중지명령은 동 명령을 발하게 되었던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ITC가 판정하거나 수입

배제의 경우 이 사실을 ITC가 재무장관에 통보할 때까지는 유효하다.

(2) ITC에 의해 본조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자가, 더 이상 본조를 위반하고 있지 않다는 판정을 구하거나, (d), (e), (f), (g) 또는 (i)항에 따라 취해진 반입배제조치나 명령을 수정 또는 철회해 달라고 청원하는 경우-

(A) 그러한 청원에 대한 ITC의 심사절차에서 입증책임은 청원자에게 있고; 그리고

(B) ITC는 동 청원에 대해 다음을 근거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i) 새로운 증거나 과거 심사절차에서 제시될 수 없었던 증거, 또는

(ii)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연방규칙"에 의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해 구제조치를 허용할 정도의 근거

(1) 미국에 의한 또는 위한 수입

(a)(1)에 의한 특허권, 저작권, 마스크워크 또는 의장에 관한 조사절차에 근거한 경우, (d), (e), (f), (g) 또는 (i)에 의한 반입배제 또는 명령은, 미국 정부의 허가 또는 승인 하에 미국에 의해 미국이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또는 미국을 위하여 수입되고 미국을 위하여 예정인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1)항에 의거 특정물품에 대해 (d), (e), (f), (g) 또는 (i)에 따른 반입배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 경우, (적용되었다면 입지 않았을) 피해를 입은 당해 특허, 저작권, 마스크 워크 또는 의장권자는 USC 제28편 제149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연방항소법원에 제소하여 합리적이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m) "미국"의 정의

본조와 본법 제1338조와 제1340조의 목적상 "미국"이라 함은 미 통일관세율표(HS 관세율표) 총칙 2에서 정의된 바의 미국 관세영역을 의미한다.

(n)대외비 정보의 공개

(1) 본조에 따른 조사절차와 관련하여 ITC에 제출되거나 관련당사자간에 교환된 것으로 ITC규칙에 의거 정당하게 대외비로 지정된 정보는 그것을 제출한 자의 동의 없이는 누구에게도 (이하 (2)에 기술된 자는 제외) 공개될 수 없다.(단, 당해 정보에 대해 제한적인 공개를 인정하는, ITC규칙에 의거 발해지는 비밀보호명령에 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1)에 포함된 금지에도 불구하고, (1)에 언급된 대외비정보는 다음의 자들에게는 공개될 수 있다.-

(A) 다음 경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ITC 관리 또는 종사자-

(i) 대외비정보와 관련된 조사 및 관련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ii) (e), (f) 또는 (j)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의 운영과 관련된 경우,

(iii) 본조 (d), (e) 또는 (f)항에 따라 발해진 배제명령, 본조 (f)항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본조 (c)항에 따른 승낙명령의 집행 및 시행과 관련된 경우,

(iv) 본조 (d), (e), (f), (g) 또는 (i)항에 의거 발해진 임시적 또는 영구적 명령, 또는 본조에 따라 발해진 승낙명령의 수정 또는 철회, 또는

(v) 조사 또는 관련절차의 행정적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B) 본조 (j)항의 재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미국 정부의 관리 또는 종사자, 또는

(C) 동 정보가 제출된 관련 조사 결과로, 본조 (d), (e) 또는 (g)에 근거한 배제조치의 시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미국세관의 관리 또는 종사자.